

## 서울特別市麻浦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 개정이유

'90.11. 6차로 改正된 地方財政法 施行令 (令 第13156號)에 의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財產加額을 算定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대부료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등 부담이 급격히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대부료등의 算出額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등을 조정하기 위한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가 改正됨에 따라 서울特別市麻浦區區有財產管理條例를 改正하고자 함.

## ○ 주요골자

區有財產을 계속해서 2個年度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前年度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는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하향조정함(안 第22條의2)

## 서울特別市麻浦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麻浦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22條의2(대부료등에 관한 特例)區有財產을 계속해서 2개 연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연간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條에서 이하 같다)가 前年度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 한 때에는 당해 年度의 대부료 인상을은 第2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부료 인상을
10% 이상 20% 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 이상 50% 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 이상 100% 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 이상 200% 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 이상 500% 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 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 附 則

- ①(시행일)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 한다
- ②(대부료등의 산정 기준에 대한 적용례)  
第22條의 2의 規定은 1990年 11月 10日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新・舊條文對備表

現 行	改 正 (案)														
(신 설)	<p>第22條의2(대부료등에 관한 特例) 區有財產을 계속해서 2개 연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前年度에 納付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增加 한 때에는當該 年度의 대부료 引上率은 第2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20px; width: 100%;"> <thead> <tr> <th>증 가 율</th> <th>대 부 료 인 상 율</th> </tr> </thead> <tbody> <tr> <td>10% 이상 20% 미만</td> <td><math>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math></td> </tr> <tr> <td>20% 이상 50% 미만</td> <td><math>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math></td> </tr> <tr> <td>50% 이상 100% 미만</td> <td><math>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math></td> </tr> <tr> <td>100% 이상 200% 미만</td> <td><math>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math></td> </tr> <tr> <td>200% 이상 500% 미만</td> <td><math>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math></td> </tr> <tr> <td>500% 이상</td> <td><math>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math></td> </tr> </tbody> </table>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 이상 20% 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 이상 50% 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 이상 100% 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 이상 200% 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 이상 500% 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 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 이상 20% 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 이상 50% 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 이상 100% 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 이상 200% 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 이상 500% 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 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